

의안번호	2214778
의 퇴 인	이수진의원
회 답 일	2026.3.30.
추계번호	26C6722

건축물 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사를 양성하고 국가자격시험을 도입 및 위생관리기준을 마련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0억 3,500만원, 2031년 1억 8,100만원 등 5년간 총 27억 3,600만원(연평균 5억 4,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전문인력의 양성 등·직무 교육(안 제14조·제20조)	1,100	112	114	117	119	1,562	312
건물위생관리사의 면허 등 (안 제15조)	635	58	59	60	62	874	175
위생관리기준 (안 제21조)	300	—	—	—	—	300	60
합 계	2,035	170	173	177	181	2,736	547

주: 1.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추후 사업 세부내용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2.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4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 보건복지부장관은 건물위생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으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건물위생관리책임자 또는 건물위생관리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대학, 그 밖의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건물위생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제2항)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15조 (건물위생관리사의 면허 등)	○ 건물위생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건물위생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제1항) ○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며, 시험과목·시험방법·합격기준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 ○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제3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건물위생관리사 면허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1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면허 등록 및 면허증 발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6항) ○ 제6항에 따른 면허의 등록, 수수료 및 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7항)	의무규정
3	안 제19조 (위생교육)	○ 건물위생관리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제1항) ○ 제7조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안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제2항)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2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영업장별로 해당 건물위생관리업체의 임원 또는 건물위생관리원을 지정하고 그 임원 또는 건물위생관리원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위생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위생관리원이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은 때에는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3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협회 또는 위생관리업무에 관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제4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안 제20조 (직무교육)	○ 건물위생관리책임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건축물등의 위생관리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과 보건안전에 관한 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제1항) ○ 건물위생관리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 후 6개월 안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제2항) ○ 건물위생관리원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제3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협회 또는 위생관리업무에 관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제5항)	의무규정
5	안 제21조 (위생관리기준)	○ 건물위생관리업자, 건물위생관리책임자 및 건물위생관리원(이하 “종사자등”이라 한다)이 영업장에서 지켜야 할 위생관리기준(이하 “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1항)	의무규정
6	안 제24조 (건물위생관리감시원)	○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건물위생관리감시원을 둘 수 있다.(제1항) ○ 제1항에 따른 건물위생관리감시원의 자격·임명·업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	재량규정
7	안 제25조 (명예건물위생관리감시원)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건축물등의 위생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명예건물위생관리감시원을 둘 수 있다.(제1항) ○ 제1항에 따른 명예건물위생관리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2항)	재량규정
8	안 제32조 (건물위생관리원의 고용승계 등)	○ 보건복지부장관은 건물위생관리업무와 종사자등의 경력관리, 안전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제3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협회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제4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14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2	안 제15조 (건물위생관리사의 면허 등)		
3	안 제19조 (위생교육)	×	○ 미대상 －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건물위생관리를 포함한 9개 영업자단체 ¹⁾ 에서 업종별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피교육자로부터 실비 수준의 수강료를 받아 운영되어 보건복지부의 별도 예산은 지원되고 있지 않음
4	안 제20조 (직무교육)	○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5	안 제21조 (위생관리기준)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6	안 제24조 (건물위생관리감시원)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감시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임명하고 있으며,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감시원의 자격 등에 따라 제정안에 따른 건물위생관리감시원의 신규 채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7	안 제25조 (명예건물위생관리감시원)		
8	안 제32조 (건물위생관리위원의 고용승계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는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어려워 추계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문인력의 양성 등(안 제14조), 건물위생관리사의 면허 등(안 제15조), 위생관리기준(안 제21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함

1) 숙박, 목욕, 이용, 미용(일반, 네일, 피부, 메이크업), 세탁, 건물위생관리

-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전문인력의 양성 등·직무교육(안 제14조·제20조)

- 제정안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책임자 또는 건물위생관리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직무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를 위탁할 센터에 대한 사업 지원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준용하여 추계 첫 해에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비 9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 2027년 이후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교육센터 운영비를 준용하여 매년 운영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하며, 2026년 기준 운영비 1억 1,000만원이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추계 결과, 추계기간 동안 15억 6,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표 1]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직무교육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전문인력의 양성 등·직무교육 (안 제14조·제20조)	1,100	112	114	117	119	1,562	31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건물위생관리사의 면허 등(안 제15조)

- 제정안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사 자격시험을 국가시험으로 도입하기 위한 ①출제 및 문항개발 기준 개발, ②전산시스템 구축비용, ③국가시험 운영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와 2026년 보건복지부 소관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 사업 비용을

참고하여 추계 첫 해에 출제 및 문항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비용과 시험위원회 운영비용 및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이 소요되고, 매년 국가시험 운영을 위한 운영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 (출제 및 문항개발 기준 개발) 출제 및 문항개발 기준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6,000만원, 기준 개발²⁾을 위한 위원회 운영비용 1,800만원 등 총 7,800만원 적용
※ 위원회 운영비: 수당(185,000원)×위원 수(33인)×3회
- (전산시스템 구축비용) 문항 관리 시스템, CBT 출제 시스템, 응시자 관리 시스템 등의 전산시스템 구축비 5억원 적용
- (국가시험 운영비) 매년 시험위원회 운영(600만원), 문항 개발(3,500만원), 출제센터 운영(1,100만원), 시험 전문인력 양성 교육(500만원) 등 총 5,700만원이 소요되고 이후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 문항 개발비: 수당(217,000원)×위원 수(20인)×4일×2회

○ 추계 결과, 추계기간 동안 8억 7,4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표 2] 건물위생관리사의 면허시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출제 및 문항개발 기준 개발비	78	0	0	0	0	78	16
전산시스템 구축비용	500	0	0	0	0	500	100
국가시험 운영비	57	58	59	60	62	296	59
합계	635	58	59	60	62	874	17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위생관리기준(안 제21조)

- 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건물위생관리업자, 건물위생관리책임자 및 건물위생관리원에 대한 위생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 허가 기준, 등록 요건, 면허제도, 교육·훈련제도, 지방자치단체 업무처리지침 등 하위법령(안) 마련 및 지침·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

2) 시험과목·시간·횟수, 출제 및 문항개발 기준, 문항개발 횟수 및 문항 수, 출제위원 수 등 시험계획안 심의

-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첫해인 2027년에 위생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3억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가정

[표 3] 위생관리기준 마련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위생관리기준(안 제21조)	300	-	-	-	-	300	60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슬기	02-6788-4740	sg.lim@assembly.go.kr